

『당좌예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4.05.31 현재, 세전, 연)

구 분	내 용	
상 품 특 징	상거래의 지출을 위해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·수표의 출납사무를 은행이 대행하는 예금	
상 품 유 형	당좌예금	
가 입 대 상	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(법인격이 없는 단체, 조합은 가입불가)	
가 입 금 액	제한없음	
기 본 금 리	무이자	
세 제 혜 택	X	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
예금자보호	O	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적용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 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이용제한사항	■ 당연해지 사유 (당좌거래처 해산, 거래정지처분 등) 발생에 따른 당좌거래 제한 ■ 임의해지 사유 (자본잠식, 부채과다 등) 발생에 따른 당좌거래 제한 ■ 신용평가 자격 미달시 수표 교부 불가 (단, 통장거래만 하는 경우는 신용평가 생략) ■ 수표교부기준 미달시 수표 교부 제한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■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 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『당좌예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예시: 유선가입시는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등)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

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『당좌예금』
- 상품특징 : 상거래의 지출을 위해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·수표의 출납사무를 은행이 대행하는 예금

2

거래 조건

: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4.05.31 현재, 세전, 연)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(법인격이 없는 단체, 조합은 가입불가)	상품유형	■ 당좌예금
거래방법	■ 신규·해지 : 영업점	가입금액	■ 제한없음
기본금리	■ 무이자	당좌개설보통금	■ 2백만원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■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		
세제혜택	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		
양도 및 담보제공	■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		
거래중지	■ 해당사항없음		
계약해지방법	■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		
휴면예금 및 출연	■ 해당사항없음		
연계·제휴서비스	■ 해당사항없음		

자료열람요구권	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 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■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0,1), 고객의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
이용제한사항	■ 당면해지 사유 (당좌거래처 사망, 폐업,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등) 발생시 계좌해지 후 사후통지 ■ 임의해지 사유 (자본잠식, 부채과다 등) 발생시 사전 통지 후 계좌해지 ■ 개설 후 연1회 신용평가 실시시 또는 신용평가 유효기간 경과, 신용평가에 따른 자격 미달시 수표 교부 제한 (단, 통장거래만 하는 경우 또는 유동화회사(SPC)는 신용평가 생략) ■ 수표교부기준 미달시 수표 교부 제한	
예금자보호여부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부록

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 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